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에 영유아, 중증환자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대상자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,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활동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, 감염원·감염경로 조사에 필요한 환경검체의 대상 및 종류를 비인체유래 검체로 확대하여 조정 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기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3 제1호가목1)가) 중 “감염병의심자를”을 “감염병의심자 또는 대리인을”로 하고, 같은 목 2)가) 중 “보건·위생·환경 관리자를”을 “관리자(보건·위생·환경 관리자를 포함한다) 또는 대리인을”로 하며, 같은 2)에 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) 면접조사 시,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별표 1의3 제1호 다목1) 중 “장비 등에서”를 “장비 등 비인체유래 검체에서”로 하며, 같은 목 2)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험 종류	검체 대상
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공중시설의 물
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	수영장, 냉·온수기의 물
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보존식(保存食)
「먹는 물 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검사	상수도, 지하수, 냉·온수기의 물
식품공전(食品公典)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	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
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	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(도마, 칼, 행주, 식기, 수족관 물 등을 말한다)
수인성(水因性) 원충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수영장
기타 검출 시험	역학조사에 필요한 비인체유래 검체

별표 1의3 제1호라목3) 중 “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”를 “농림축산검역본부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.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) 설문조사 가) 설문조사는 <u>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</u> 나) ~ 라) 생략 2) 면접조사 가)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<u>보건·위생·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</u> 나) ~ 다) 생략 라) <신설> 다. 환경검체(環境檢體) 채취 및 시험 1)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	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1) (현행과 같음) 가) 설문조사는 <u>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또는 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</u> 나) ~ 라) (현행과 같음) 2) (현행과 같음) 가)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<u>관리자(보건·위생·환경 관리자를 포함한다) 또는 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</u> 나) ~ 다) (현행과 같음) 라) 면접조사 시, <u>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다. 환경검체(環境檢體) 채취 및 시험 1)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

양, 물(상수도, 지하수, 냉각탑 · 수영장 · 온천 · 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), 식품, 도구(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), 장비 등에서 채취한다.

- 2)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,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시험 종류	검체 대상
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공중시설의 물
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	수영장, 냉 · 온수기의 물
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보존식(保存食)
「먹는 물 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검사	상수도, 지하수, 냉 · 온수기의 물
식품공전(食品公典)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	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
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	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(도마, 칼, 행주, 식기, 수족관 물 등을 말한다)
수인성(水因性) 원충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수영장
(신설)	

라.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

- 1) ~ 2) 생략

- 3)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

양, 물(상수도, 지하수, 냉각탑 · 수영장 · 온천 · 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), 식품, 도구(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), 장비 등 비인체유래 검체에서 채취한다

- 2) (현행과 같음)

시험 종류	검체 대상
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공중시설의 물
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	수영장, 냉 · 온수기의 물
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보존식(保存食)
「먹는 물 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검사	상수도, 지하수, 냉 · 온수기의 물
식품공전(食品公典)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	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
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	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(도마, 칼, 행주, 식기, 수족관 물 등을 말한다)
수인성(水因性) 원충 검출 시험	상수도, 지하수, 수영장
기타 검출 시험	역학조사에 필요한 비인체유래 검체

라. (현행과 같음)

- 1) ~ 2) 생략

- 3) -----

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(病性)감정을 하는 <u>국립수의과학검역원</u>이나 시·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질병진단 등 병성(病性)감정을 하는 <u>농림축산검역본부</u>나 시·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한다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3) 719 - 7130